

추록

2023.05.12.

- ◆ 발행일 : 2023년 5월 12일
- ◆ 이 추록이 필요한 책 : [세법개론] (임상엽·정정운) 29판 1쇄
- ◆ 주요 내용 : 세법 추가 개정에 따른 29판 1쇄의 수정사항 등
 - 「조세특례제한법」 (2023.4.1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2023.4.18. 개정)

임상엽·정정운

2023

29TH EDITION

세법개론

VISUAL TAXLAW

일러두기

1. 이 자료는 2023.3.6.에 출간된 세법개론 제29판 제1쇄에 대한 추록입니다.
2. 이 자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간 후 발견된 몇 가지 오류수정
 - 출간 후 개정된 법령 반영
3. 이 자료에 반영된 일부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2023. 4. 1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2023. 4. 18. 개정
4. 이 자료는 위 3.의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세법개론 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 임상엽&정정은 共著 —

I. 오류수정사항

1. 세법개론 ①

P	행	종전의 내용	고침
51	上 18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의 말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60	上 6	(위 ①~⑦에 해당하는 ...)	(위 ①~⑧에 해당하는 ...)

2. 세법개론 ②

P	행	종전의 내용	고침
105	下 1	해답 04 ②	해답 04 ①
156	下 8	(⑥ 아래 오른쪽 내용 추가)	⑦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79	上 12	(부가법 61 ⑦)	(부가법 61 ⑥)
480	上 6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上 7	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초과
	上 7	72만원 + 1,200만원을 ...	84만원 + 1,400만원을 ...
710	上 8,9	④, ⑤에	④에
751	下 9	종합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II. 개정법령으로 인한 수정사항

1. 세법개론 ①

(1)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간 연장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 이들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17.1.1. ~ 2022.12.31. (6년간) 	<input type="checkbox"/> 전문모금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간 연장 <div style="text-align: center;">] (종전과 같음)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

☞ p.326 下 4~3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 특례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지정기간 : 2023.1.1.~2028.12.31.)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17호(2023.3.31.)].

(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개정내용> 종전에는 국가전략기술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2차전지(배터리) 부품 제조 기술, 방어 항원(백신)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로 하였으나,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p.680 上 14~15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 국가전략기술: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2차전지(배터리) 부품 제조 기술, 방어 항원(백신)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수소 및 미래형 이동 수단 제조 기술 등을 말한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상향조정

<개정내용>

(1) 기본공제율 상향: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적인 자산 투자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상향(밑줄 친 부분)하는 한편,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8%·16%→15%·25%)을 상향하였다.

구분		기본공제율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u>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u>	<u>3%</u>	<u>7%</u>	<u>12%</u>
	위 외의 과세연도의 경우	1%	5%	10%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u>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u>	<u>6%</u>	<u>10%</u>	<u>18%</u>
	위 외의 과세연도의 경우	3%	6%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202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u>(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u>	8%→15%	8%→15%	16%→25%
	위 외의 과세연도의 경우			

(2) 추가공제를 상향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3%·4%'에서 '10%'로 20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1.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에 대해 적용하는 기본공제율 인상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편 2023년 1월 1일 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p.686 상 14행 ~ 下 1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4) 공제금액 :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 ① 기본공제 금액(해당연도 투자분 공제) + ② 추가공제 금액(투자증가분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기본공제율				
	구분	기본공제율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	3%	7%	12%
	그 외의 과세연도의 경우	1%	5%	10%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	6%	10%	18%
	그 외의 과세연도의 경우	3%	6%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202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15%	15%	25%
②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초과 투자금액*×추가공제율				
[다만, (추가공제 금액 > 기본공제 금액)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 초과 투자금액				
$\left(\begin{array}{c} \text{해당 과세연도에} \\ \text{투자한 금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해당 과세연도의} \\ \text{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주} \end{array} \right) = (+) \begin{array}{c} \text{해당 과세연도} \\ \text{초과 투자금액} \end{array}$				
	구분	추가공제율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	10%		
그 외의 과세연도의 경우	일반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4%		

🔍 p.687 上 8행 ~ 16행. 개정사항 삭제

NEW 개정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개정내용> 일반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하였다.

—: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4) 개정 세법 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시행일 확정

P	행	종전의 내용	고침
136	上 6	2023.3.#.	2023.3.20.

2. 세법개론 ②

(1)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개정내용>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다(p.338 下 4~1행 ⑥과 동일하게 개정됨).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3년 5월 12일 이후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p.339 上 12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3년 5월 12일 이후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2)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개정내용>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다(p.339 上 1~7행 ⑦과 동일하게 개정됨).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3년 6월 12일 이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p.339 上 13행. 다음과 같이 수정

NEW 개정사항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개정안)

⇒ **NEW 개정사항**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 p.339 上 17행 ~ 18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3년 6월 12일 이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2023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

<개정내용>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서 2023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였다(교재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개정됨).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p.540 下 17행~16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전통시장 사용분 + 2023.7.1.~2023.12.31.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p.541 上 5행. 다음과 같이 수정

NEW 개정사항 2023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개정안)

⇒ **NEW 개정사항** 2023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

(4)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임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의 납부방식 변경 개정 보류

⦿ p.994 下 4행 ~ p.995 上 2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2.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 주택 미처분시 부족세액의 징수

개인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규 주택(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 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지방법 21 ①(3), 지방령 36의3 ①,②). ■

📌 p.995 上 15행 ~ 24행. 개정사항 삭제

NEW 개정사항 —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익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의 납부방식 변경

<개정내용> 종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간 경과시 증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 및
 †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5)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비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주택 이하 소유 : 2.7% ② 3주택 이상 소유 : 5% -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 배제 ○ 공공주택사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단계 초과누진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주택 이하 소유 : 0.5%~2.7% ② 3주택 이상 소유 : 0.5%~5% -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 적용 *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0 20px;">(종전과 같음)</div> ○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비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 0.5%~2.7% -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 적용 *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 <u>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u>,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중증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단계 초과누진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주택 이하 소유 : 0.5%~2.7% ② 3주택 이상 소유 : 0.5%~5% -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 적용

<개정내용> 투기 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해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3년 4월 18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p.1047 下 9행 ~ 4행. 아래 내용으로 교체

2)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종부법 9 ②).

구분	세율
①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경우	• 0.5%~2.7%(7단계 초과누진세율)
② 공익법인 등으로서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0.5%~2.7%(7단계 초과누진세율)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0.5%~5%(7단계 초과누진세율)
③ 위 ①·② 외의 경우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2.7%(단일비례세율)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5%(단일비례세율)

(6) 개정 세법 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시행일 확정

P	행	종전의 내용	고침
131	上 11	2023.3.#.	2023.3.20.

(7) 개정 지방세법 공포에 따른 시행일 확정

P	행	종전의 내용	고침
962	下 1	2023년 #월 #일	2023년 3월 14일
965	上 4	2023년 3월 #일	
	上 5		
972	下 15		
989	上 6		
992	上 14		
1018	上 2		